
**[재공고] 18년도
오픈SW정책커뮤니티
콘텐츠제작 및 운영·홍보
– 제안요청서 –**

2018. 2.



목 차

I . 사업개요	1
II . 제안요청사항	4
III. 일반제안사항	7
IV. 제안서 작성안내	9
V . 입찰안내	11
VI. 별지서식	18

1. 사업명 : [재공고]18년도 오픈SW정책커뮤니티 콘텐츠 제작 및 운영·홍보

2. 추진 배경 및 필요성

- 공공SW 생태계 관련 다양한 오프라인 토론회가 진행 중이나 회원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시장의 다양한 의견 반영에는 한계
 - ITSA 회원사는 총 42개, KOSA는 1,567개의 회원사를 보유하여 전체 SW기업(7,366개)의 약 20%에 불과 (ICT실태조사, 2017.4)
- 효과적 정책 수립의 방안으로 온라인 오픈 커뮤니티가 부상
 - 국민신문고는 특허, 병무 등 다양한 정책이 제안되고 수립된 정책의 의견수렴 창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, 광화문 1번가에서는 약 18만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167개의 국민제안 실천과제가 채택
 - * BRIC(생물학연구정보센터)의 경우 생물학과 관련한 동향, 논문,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과 정보교환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

<광화문1번가(좌), BRIC(우) 홈페이지>

The image shows two side-by-side screenshots of websites. On the left, the Gwanghwamun 1st Street website features a search bar at the top with dropdown menus for '검색구분' (Search Type) and '전체' (All). Below the search bar is a large button labeled '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' (Please enter your search term).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'제안 전체 보기' (View all proposals) and displays a list of submitted proposals. On the right, the BRIC website has a similar layout with a search bar and dropdown menu. It also features a main content area with a list of proposals, some of which are highlighted with blue boxes. Both sites have navigation menus at the top.

- SW관련 정책에 대한 SW산업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태의 SW정책 참여 플랫폼(SNS, SPRi 홈페이지)을 제공하고, 토론·설문 결과를 수집·분석·보고하고 제언을 수렴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창구 구축 필요

3. 사업 개요

- 사업 목적 : 커뮤니티 형태의 SW정책 참여 플랫폼(SNS, SPRi 홈페이지)을 제공하고, 설문조사, 토론 등을 진행하며 제언을 수렴하여 피드백을 제공
- 사업 기간 : 계약일 ~ 2018.12.14.
- 사업 범위 : 공감, 소통의 오픈SW정책커뮤니티 소셜 미디어(페이스북 그룹, 네이버 블로그)와 SPRi 홈페이지 오픈커뮤니티 게시판(정책 제언, 이슈 토론, 정책 자료, 설문조사, SW민원)의 콘텐츠 기획·제작, 활성화 전략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일체 사항
 - 사용자 접근·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한 홈페이지형 네이버 블로그 메인 페이지 디자인 포함
 - 계약기간 동안 페이스북 그룹·네이버 홈페이지형 블로그·SPRI 홈페이지 오픈커뮤니티 게시판 콘텐츠 제작 및 운영·홍보
 - * 커뮤니티 관련 운영 모니터링, CS 대처, 콘텐츠 업데이트 포함
 - * PPT 또는 한글(HWP) 파일로 된 콘텐츠 원본을 8~10페이지 이하의 카드뉴스로 가공하여 페이스북 그룹, 네이버 홈페이지형 블로그, SPRi 홈페이지 게시판에 월 4회(7일 단위) 게시하고 토론을 유도
 - * SNS커뮤니티 이용 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삭제 규칙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등록할 수 있으며, 관련 게시물은 통지 없이 전체 혹은 일부가 임의 삭제될 수 있고, 위배 수준이 심각하거나 상습적 위배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용 제한

※ 매체 별 접속 경로(URL)

매체 명	접속 경로(URL)
페이스북 그룹	https://www.facebook.com/groups/122992425079035/
SPRI 홈페이지	https://www.spri.kr
네이버 블로그	'18년 2월 중 오픈 예정

* SPRi 홈페이지 오픈 커뮤니티 메뉴는 '18년 4월 중 오픈 예정

4. 추진 일정

- '18년 2월 사업 공고
- '18년 3월 중 용역업체 선정, 계약

- ’18년 3월 중 오픈SW정책 커뮤니티 운영 시작
- ’18년 12월 중순 : 완료 보고
 - *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5. 예산 규모 : 95,000,000원 (VAT 포함)

- ※ 부가세 면세사업자(비영리기관 등)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가격제안
- ※ 선금은 기관 사정으로 3월에 지급될 예정

6. 사업자 선정 : 협상에 의한 계약

7. 기대 효과

-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양방향 의사소통을 통한 소통강화
- 주요 정책 홍보를 통한 기관 신뢰도 및 호감도 상승

1. 네이버 블로그 메인 페이지 디자인 및 매체별 콘텐츠 시안 제작

- 네이버 블로그 메인 홈페이지 디자인
 - 주메뉴 : 이슈 토론, 정책 자료(산업 동향, SPRi 칼럼), 설문 조사
- SW중심사회포털,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,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, 한국소프트웨어기술진흥협회 등과 연계하여 상호 배너(링크) 제공
- 매체별 1개 이상 콘텐츠 시안 제작

2. SNS와 SPRi 홈페이지 오픈커뮤니티 메뉴를 활용한 오픈SW정책커뮤니티 운영전략 수립

- 이용자의 관심분야, 현재 이슈 등을 종합한 상황 분석
- 이용자 인지도 분석 및 관심사항을 고려한 운영방향 설정
- 과업기간 운영 계획서 수립 및 제출 (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)

3. 오픈SW정책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계획 및 운영

- 인지도 향상, 팔로워 유입 및 방문자 증대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모션 기획 및 실시(포털 메인화면 노출 등)
 - * 페이스북 그룹 가입자수 1000명 이상 확보
- 컨텐츠 홍보 횟수(포털 메인화면 노출 등의 횟수) : 55회 이상
 - 컨텐츠 업로드 일정 및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주요 행사와 연계
- 설문조사 이벤트 실시
 - 커뮤니티 만족도 설문조사(1회), 정책 관련 설문조사(2회) 포함
- 라이브 방송 이벤트 실시
 - 오프라인 공청회 등 페이스북 등의 라이브 방송 기능을 통해 중계
- 설문조사를 포함한 이벤트 응모방식 및 추첨자 선정

- 응모방식 및 추첨자 선정, 경품 품목 등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사업담당자와 과업수행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
 - * 각 설문조사 참여자 200명 이상 모집
- 행정사항
 - 이벤트 진행 방법, 경품 선정 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추진
 - 경품구매, 당첨자 선정방식, 예산수반내역 등 증빙자료 모두 제출

4. 자체 콘텐츠 제작 및 기존 콘텐츠 수집, 가공

- 콘텐츠 가공 및 업로드
 - 1) 이슈토론 콘텐츠 : 월 4회(7일 간격)
 - 주 1회 토론 콘텐츠를 제작해서 SPRi 홈페이지 이슈토론 게시판에 업로드 후 SNS 채널(네이버 블로그, 페이스북 그룹)에 공유
 - 2) 정책자료 콘텐츠 : 월 1회.
 - 뉴스 형식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주요 자료를 큐레이션하여 SPRi 홈페이지 정책자료 게시판과 SNS 채널에 업로드
 - 3)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콘텐츠 제작
 - 주요행사 및 현안사항 발생 시 제작 지시
 - 콘텐츠 작성방식
 - 1)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
 - 2) 제작 콘텐츠 블로그 연동 게재 및 내용축약 후 페이스북 그룹 게재
 - 3) 사진, 영상 등을 포함한 콘텐츠 제작
 - 콘텐츠 수집 및 재가공
 - 1) 온라인상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관련 콘텐츠 수집 및 저작권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가공
 - 2)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인쇄 홍보물 콘텐츠 일부 가공
- ※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인용한 글의 경우 출처 표시

5.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채널 운영, 관리

- 콘텐츠 게시에 따른 반응 분석 및 실시간 대응
 - 1) 댓글, 좋아요 등 해당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
 - 2) 반응 분석을 통한 향후 콘텐츠 생산방향 설정
- 시기, 상황 등을 반영한 스킨 리뉴얼 및 기능개선
 - 1) 계절, 상황에 맞게 시기적절한 배경 설정
- 방문자 응대 및 지속적 관리를 통한 긍정적 관계 구축
 - 1) 모니터링 요원의 실시간 질의응답, 댓글 대응
 - 2) 친구 맺기(팔로잉), 답글, 쪽지 등 친밀감 유지 활동 실시

6. 정기회의 개최 및 기간별 운영보고서 제출

-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사업담당자와의 정기회의 개최
 - 1) 월 4회 대면회의 개최
 - 2) 금주 실적보고 및 차회 콘텐츠 생산 테마 선정, 운영방안 논의
 - 기간별 운영보고서 제출 (아래 내용 포함 작성)
 - 1) 보고서 제출은 주간, 월별, 분기별로 각각 제출
 - 2) 생산·가공 콘텐츠에 대한 반응분석
 - 3) 콘텐츠 게시 및 이벤트 실시에 따른 이용자 유입 분석
 - 4)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 확산 및 타 매체 활용 방안 마련
- ※ 과업 파악, 점검 등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 요청자료 즉시 보고
※ 개편, 이벤트, 정책 사안에 따른 비정기보고서 작성
※ 보고 시 도출된 보완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반영
※ 보고에 수반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

1. 사업관리

- (사업추진일정) 착수에서 종료까지 사업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
- (보고 및 검토계획) 사업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정기적인 회의 및 보고회 개최
- (수행조직)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, 투입인력 규모, 투입인력 인적사항 및 역할 제시
 - 용역 수행사업자의 PM(프로젝트 관리자)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

2. 유의사항
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각종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 비용은 제안사 부담
- 과업완료 후, 산출물에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야 함
 - 용역수행자는 용역기간 종료 후에도 연구소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,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
- 정부부처, 국회 등 외부기관에서의 자료 분석 요청 시 적극 협조
- 조사 및 분석결과에 따른 제반 산출물의 소유권은 [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](#)에 있으며, 향후 우리 연구소의 동의 없이 외부에 배포할 수 없음
- 제안사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

- 제안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며, 개인정보보호법, 동법 시행령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,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

3. 산출물 및 보고 사항

- 산출물 :
 - 사업수행계획서
 - 운영보고서(주간, 월별, 분기별)
 - 사업완료보고서(제안서, 계약서, 사업내용서, 성과, 운영보고서 등 전 업무범위 포함), 디자인 이미지를 포함한 콘텐츠 제작물을 DB화(CD)하여 제출
- 제안사는 사업추진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체계를 수립하고 착수보고, 실사진행상황 보고, 최종보고 등 수행
- 보고사항

구분	참석자	시기	내 용
착수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업수행자 -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	계약 후 7일 이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업 수행계획 보고 - 과업 수행방안 협의
운영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업수행자 -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	분기, 월간 및 주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요현안 및 의사결정 요망사항 - 운영 기초 통계
최종보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업수행자 -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	사업 완료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업 추진결과 보고

* 상기내용은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

1.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

목차	작성요령	비고
I. 제안 개요	○ 제안 기관 및 단체 등은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, 범위, 전제조건,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,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	
II. 제안사 일반부문		
1. 일반현황	○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,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제시	별지 제2호 서식
2. 관련분야 사업실적	○ 제안사의 제안요청 사업 관련분야의 사업 실적을 제시(최근 3년간)	별지 제3호 서식
3. 조직 및 인원현황	○ 인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	별지 제4호 서식
III. 사업 수행부문		
1. 개요	○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	
2. 추진목표 및 전략	○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	
3. 주요 사업내용	○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	
4. 세부과제별 추진방안	○ 제안요청내용의 세부항목별 추진방안과 계획 제시 - 세부과제 체계 및 전략제시 - 각 요청사항별 추진방안 제시 -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조직 운영방안 및 역할	
5. 결과물 제출계획	○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내역 및 활용방안	
IV. 사업 관리부문		
1. 추진일정 계획	○ 사업 추진일정을 제시	
2. 보고 및 검토계획	○ 사업기간 중의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제시	
3. 산출물 계획	○ 주요 산출물의 내용 및 제출시기 등을 제시	
4.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	○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제시	
5.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	○ 본 사업을 수행인력 및 이력사항을 작성 - 본 사업의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작성 -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기술	별지 제5호 서식
6. 사후 지원계획	○ 제안사는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계획(범위, 기간 및 방법) 명시	
7. 기타 지원사항	○ 추가 지원이 가능한 경우, 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	
V. 기타	○ 제안요청내역 이외 추가적인 아이디어 및 기타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적, 관리적 지원사항 제시	
별첨	○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	

* 연구소에서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은 별도 기술하고 근거 자료 첨부

2. 제안서 작성지침

- 가.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할 것.(“Ⅱ.제안요청내용” 을 검토 반영)
- ※ 1. 번호체계는 「I」, 「1」, 「가」, 「o」, 「-」, 「.」 순으로 기입
2.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시, 해당항목에 「해당사항없음」으로 간략히 기술
- 나.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
※ 제안서는 아래아_한글 또는 MS_PPT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작성가능
- 다. 제안서 본문 내용 및 제안발표 자료의 작성분량에는 제한이 없으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하며, 제안서는 원본 및 사본 파일을 각 1부씩 제출 (원본파일, 평가용 사본파일 각 1부)
- 라.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,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
- 마. 제안서는 한글(국어)작성이 원칙이며,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
- 바.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사. 제안서의 내용은 “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”하여야 함. 예를 들어, 사용가능하다, 할 수 있다,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,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하여야 함
- 아.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조견표를 목차 앞부분에 제시하여야 함
- 자. 본 입찰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함

1.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

가. 기본방침

-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

나. 적용규정

-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운영요령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,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”

다. 입찰방식 : 제한경쟁입찰(공동수급 허용)

라. 입찰참가자격
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
-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 당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입찰참가신청시 우리 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
-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, 비영리법인
※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이 적용됨

마.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마감

- 접수마감 : 입찰공고문 참조 (**시간초과 시 접수불가**)

- 접수방법 : NIPA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접수
 - 등록시스템주소 : <http://cont.nipa.kr>
 -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, 방문접수 불가
 - ※ 접수마감 기한 경과시 전자계약시스템(온라인 접수)이 자동 중지(연장 불가)되며,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, 등록 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~2일 전 여유를 갖고 접수완료 하시기 바람

○ 제출서류 (제안서와 별도 제출)

※ 단독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래의 ‘공동수급업체대표자’ 서류만 제출

구 분	대표사	공동수급구성원		
입찰참가신청서 1부 (별지서식)	필수	해당없음		
입찰보증금 (보증증권)	필수	해당없음		
가격제안서 1부 (별지서식) (지정된 칸에 등록 시 시스템에서 자동보안처리 됨)	필수	해당없음		
가격산출세부내역 1부 (별지서식) (지정된 칸에 등록 시 시스템에서 자동보안처리 됨)	필수	해당없음		
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필수			
법인인감증명서 1부	필수			
법인등기부등본 1부	필수			
국세,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(증명서 하단의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)	필수			
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각 1부 (별지서식)	필수	해당없음		
유사사업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이상 (별지서식, 해당시)	해당시 선택			
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(별지서식, 해당시)	해당시 참여사 공통 필수			
사용인감계 1부	해당없음	해당시 필수		
제안서 원본 및 사본 각 1부 (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참조)	필수	해당없음		
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(중소기업청 발행)	필수 (개인사업자, 비영리법인은 해당없음)			
주의사항				
※ 모든 서류는 전자계약시스템에(http://cont.nipa.kr) 파일로 접수(마감전 완료되어야 함) ※ 별도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거나, 도장을 스캔하여 파일에 삽입하여 제출 ※ 공동수급시 공동수급대표자가 구성원의 서류를 총괄하여 제출 ※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zip파일로 압축하여 등록 ※ 증빙기간만료, 서류누락 등의 오류시 입찰부적격 처리되오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	

○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

-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

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

-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용역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제안서 사본에는 자사를 식별할 수 있는 (로고, 회사명, 대표자명, 특정제품명 기타 등등)것을 지우고 제출 하여야 함

사. 입찰보증금

-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/100 를 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」 제37조제2항의 보증서로 납부(단,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연구소에 귀속됨)

※ 보증서의 보증기간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일자이어야 하며,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

아.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실시

- 종합 평가점수(100%) = 기술평가(90%) + 입찰가격평가(10%)
- 기술 평가 점수 산정방식
 -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
 -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점수의 합계(평균)로 평가점수산정
- ※ I) 제안사 발표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마감 후 입찰업체 개별 통보
II) 발표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(자유양식, 제안서 내용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수행능력 위주로 기술, 20분 발표/10분 질의 응답)
-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
- 기술평가 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

<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>

구분	항목	내용	배점
사업일반 (20)	제안요청내용의 이해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목표 및 내용 이해도 - 제안요청내용과의 부합성 및 요구사항 준수 여부 	10
	제안 업체 일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당분야 전문성 및 강점 - 유사사업 수행경험 -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 	10
사업수행 (50)	사업 추진 전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목표, 사업범위, 추진내용의 적절성 - 사업 추진전략의 차별성 - 사업체 조사의 적절성 및 차별성 	25
	제안 내용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사 방법 및 조사 설계의 적절성 - 조사결과의 대표성, 정확성,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구체성 - 실태조사, 인터뷰, 결과분석 방법의 적절성 - 전문가 활용 및 자문위원회 활용방안 	25
사업관리 (20)	프로젝트 관리 및 산출물 작성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품질보증 계획 및 산출물 작성 계획의 적정성 - 최종보고서 구성 및 목차(안)의 적정성 	5
	추진체계 및 투입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 추진체계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- 실무책임자(PM) 역량 및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	5
	추진일정 및 보고 · 검토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도관리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- 보고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	5
	사업지원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종료 후 지원계획의 적정성 - 추가 제안 사항 	5
계			90

○ 가격점수(입찰가격 평점 산식)

▷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\text{평점} =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} \times \left(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당해입찰가격}} \right)$$

- *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
- *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
- *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
▷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$$\text{평점} = \text{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} \times \left(\frac{\text{최저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} 80\% \text{상당가격}} \right)$$

$$+ \left[2 \times \left(\frac{\text{추정가격의} 80\% \text{상당가격} - \text{당해입찰가격}}{\text{추정가격의} 80\% \text{상당가격} - \text{추정가격의} 60\% \text{상당가격}} \right) \right]$$

- *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
- * 당해입찰가격 :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
- *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
- *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

자.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

-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자
-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
-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, 기술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부문 중 배점이 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순위자로 함

차. 낙찰자 선정방식 : 협상에 의한 계약

- 기술협상 :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, 이행일정 등의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/보완/변경/추가/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
- 가격협상 : 협상예정가격이하 가격협상
※ 협상결렬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입찰

카. 입찰의 무효

-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-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진흥원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
-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
-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
-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
-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, 동일과제에 타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불가능

타. 부정당 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

파. 비밀유지의 의무

-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됨

하. 관계 규정/법령 등의 숙지

-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

계약에 관한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,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

2. 기타 유의사항

가.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

- 낙찰자는 입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세부 사업수행계획서(세부 추진계획, 세부 추진일정표, 추진체계도 등)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일정단위로 사업 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
- 낙찰자는 계약 후 7일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(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)
-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,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
-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결과
 - 사업수행 평가 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, 기존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하거나, 하도급을 할 수 없음
- 공동수급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고, 각 구성원의 비율은 10% 이상으로 함

나. 기타

- 비영리기관에서 입찰할 경우 사업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한도내에서 가격제안

다. 안내 및 문의

- 입찰관련문의 : 경영지원실 허혜정 (031-739-7306)
- 사업관련문의 : 산업체도연구실 강송희 (031-739-7353)

VI. 별지

(별지 제 1 호 서식) 제안서에 포함

일반현황 및 연혁

회 사 명	「※」원본기재 /사본공란	대 표 자	「※」원본기재/사본공란
사 업 분 야			
주 소	「※」원본기재 /사본공란		
전 화 번 호	「※」원본기재 /사본공란		
설립년도	년 월		
해당부문 종사기간	년 월	~	년 월 (년 개월)
주 요 연 혁			

* 공동수급체인 경우, 구성원별 각자 작성

주1) 「※」부분은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은 공란 제출

주2) 주요연혁은 원본에는 회사명을 기재, 사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고 제출

(별지 제 2 호 서식) 제안서에 포함

자본금 및 매출액(최근 3개년)

(단위: 천원)

구 분	M-2년도	M-1년도	M년도
총 자 산			
자 기 자 본			
유 동 부 채			
고 정 부 채			
유 동 자 산			
당 기 순 이 익			
매 출 액	OO 부문		
	계		
유 동 비 율			
매 출 액 순 이 익 율			

* 공동수급체인 경우, 구성원별 각자 작성

주) 사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지 말고 원본에만 기재

주요사업실적 (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)

(단위: 천원)

사업명	사업기간	계약금액	발주처	비고
	0000. 0. 0 ~ 0000. 0. 0			

-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,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
-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
-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

* 공동수급체인 경우, 구성원별 각자 작성

주) 사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지 말고 원본에만 기재

참여인력 이력사항

성명	「※」 원본기재/ 사본공란	소속	「※」 원본기재/ 사본공란	직책		연령	세
학력	대학		전공	해당분야근무경력		년 월	
	대학원		전공	자격증			
본사업 역할			사업참여 기간			참여율	%
경력							
사업명	참여기간 (년월일-년월일)		담당업무	발주처		비고	
	0000.0.0 ~ 0000.0.0						

- 본 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(최근참여 사업 순 기재)
- “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”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(예시) 업체명 (원소속사명)

주) 「※」 부분은 원본에만 기재하고 사본은 공란 제출

(별지 제 5 호 서식, 해당시 제출) 원본은 별도제출, 지정된 칸에 등록

사본은 「※」 부분을 공란처리하여 제안서에 첨부

용역이행실적증명서

신청인	상호	「※」원본기재 /사본공란		대표자	「※」원본기재/사본공란 (인)	
	영업장소재지	「※」원본기재 /사본공란		전화번호	「※」원본기재/사본공란	
	사업자번호	「※」원본기재 /사본공란		제출처		
	증명서용도					
	용역범위					
용역 이행 실적 내용	용역명					
	용역개요					
	계약일자	계약기간	계약금액	이행실적		비고
				비율	실적	
증명서 발급 기관	위 사실을 증명함					
	2013년 월 일					
	기관명 : (인)					
	주소 :					
발급부서 :	담당자 :	(인)	전화번호 :			

* 반드시 발주처의 증명확인이 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원본은 별도제출, 사본은 「※」 부분을 공란처리하여 제안서에 첨부

주2) 본사업 참여역할과 연관된 수행업무 중심으로 기재 (최근참여 사업순 기재)

(별지 제 6 호 서식) 제안서와 별도 제출, 지정된 칸에 등록 (보안처리 됨)

가격산출근거표

(단위 : 원)

분 야	항 목	수량	단 가	금 액	비고

* 엑셀 등 기타양식 사용 가능

공동수급 표준협정서 (공동이행방식)

제1조 (목적) 이 협정서는 ○○○, ○○○와 ○○○사가 재정.경영,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『**용역 명**』에 대한 계획.입찰.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 (공동수급체) 공동수급체의 명칭, 사업소의 소재지,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.

1. 명 칭 :
2. 주사업소의 소재지 :
3. 대 표 자 명 :

제3조 (공동수급체의 구성원)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
1. ○○○회사(대표자 :)
 2. ○○○회사(대표자 :)
 3. ○○○회사(대표자 :)
-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○○○로 한다.
-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,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.

제4조 (효력기간)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,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. 다만,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.

제5조 (의무)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.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.

제6조 (책임)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.

제7조 (하도급)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.

제8조 (구성원의 참여비율)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1. ○○○ : %
2. ○○○ : %
3. ○○○ : %

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,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.
제9조 (손익의 배분)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.

제10조 (권리. 의무의 양도 제한)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1조 (중도탈퇴에 대한 조치)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.

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.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. 다만,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.도급 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,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.

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.

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

제12조 (하자담보책임)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13조 (운영위원회)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.

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○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.

2013년 월 일

○○○ (인)

○○○ (인)

○○○ (인)

합의각서

입찰 공고 번호	NIPA(전자)제 14 - 호	입찰일자	2014년 월 일
입찰건명			

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,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 하겠으며,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.

2013년 월 일

공동수급체 대표자

주사무소 소재지
상 호
성 명 (인)
사업자등록번호
법인 등록 번호

공동수급체 구성원

주사무소 소재지
상 호
성 명 (인)
사업자등록번호
법인 등록 번호

공동수급체 구성원

주사무소 소재지
상 호
성 명 (인)
사업자등록번호
법인 등록 번호